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 운영 지침

2016.	10. 28	제정
2017.	04. 12	개정
2018.	06. 11	개정
2019.	05. 28	개정
2020.	10. 23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량 가스시설·제품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고법”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액법”이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하“도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불법행위, 불량시설, 불량제품(이하 “**불법행위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라 함은 불법행위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불법행위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행정관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가스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직무관련종사자”라 함은 행정관청 가스담당, 수사기관, **공사 직원**을 말한다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등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FAX, 우편 또는 방문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법」, 「액법」, 「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
2. 「고법」, 「액법」, 「도법」을 위반한 불량시설
3. 「고법」, 「액법」, 「도법」을 위반한 불량제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외의 불법행위등은 필요에 따라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공사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는 종결할 수 있다.

1. 동일 내용으로 신고 되어 종결되지 않은 경우
2.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 삭 제 >
5. 별표에 따른 각각의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행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공사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공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요구 또는 조사의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관련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2.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단, 야간 불법주차는 연간 1인당 5건을 초과하는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1회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 삭 제 >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공사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 또는 조사의뢰한 건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호) 공사는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공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공사는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간 협조) 공사는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협의 요청 또는 협조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지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공사 사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지침 개정 이후 1개월 동안 이 지침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지침 개정 이후 1개월 동안 이 지침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

(불법행위등 신고포상제도 운영 지침 제4조제2항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①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및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벌크로리에서 벌크로리 또는 용기로 충전, 용기에서 용기 충전 등 - 관련규정 : 액법 제5조제1항 및 고법 제4조제1항 ◆ (증빙자료) 충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100만원	
②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LPG판매 허가만 받고 고압가스도 판매하는 행위 포함, 허가받은 가스 종류 외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포함 - 관련규정 : 고법 제4조제5항, 액법 제5조제2항 ◆ (증빙자료)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0만원	
③ (불법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 불법 고압가스용기(이하 “고압용기”라 한다), 불법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 폐기대상 또는 재검사 기간 경과 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 충전 - 관련규정 : 고법 제13조제2항, 액법 제24조 또는 제32조제2항 ◆ (증빙자료) 사진(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등 제조 연월,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동영상 등	50만원	
④ (불법용기 판매) 불법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판매하는 행위 -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한 충전된 용기 판매 - 관련규정 : 고법 제13조제4항, 액법 제24조 ◆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 연월,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거래영수증 등 ※ 홈페이지(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참고사항 ②에 있는 “불법용기 증빙자료(사진) 작성방법” 참고	50만원	
⑤ (용기 불법 보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사업소내 제외)에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 관련규정 : 고법 제4조제6항, 액법 제32조제1항 ◆ (증빙자료) 주변 환경과 고압용기 및 LPG용기가 보관된 상태가 같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위치 등	50만원	
⑥ (불법 차량) 허가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고압가스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사업소 대표자 명의를 아닌 LPG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포함) - 관련규정 : 고법 제5조의4제1항 및 2항, 액법 제32조제1항 ◆ (증빙자료)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등	10만원	
⑦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고압용기 및 LPG용기 판매사업) - 관련규정 : 고법 제4조제6항, 액법 제32조제1항 ◆ (증빙자료) 무허가 장소의 간판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위치 및 영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10만원	
⑧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제외대상 : 난방기용 용기,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 - 관련규정 : 액법 제24조 ◆ (증빙자료) 가스판매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가스 값 외에 용기 값을 받은 것이 표시된 것에 한함)	5만원	
⑨ (미검사 가스용품 판매 행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39제1항, 제3항 ◆ (증빙자료) 가스용품 판매자의 주소(카페 주소 및 인터넷 사이트 등), 구매용품, 구매영수증 등	5만원	
⑩ (액화석유가스 설치와 검사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공자나 가스를 공급한 공급자의 불법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44조제2항, 제8항 ◆ (증빙자료) 미검사업소의 사진, 업소명 및 업소 주소 등	5만원	
⑪ (불법 주차)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를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에 이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 - 관련규정 : 고법 제13조제1항, 액법 제24조 또는 제32조제1항 ◆ (증빙자료) 충전사업소 또는 판매사업소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용기를 적재한 채 주차한 차량 또는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된 벌크로리를 동일 장소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3매 이상(사진촬영 방법 :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주위 현장 지형물이 동시에 나오도록 동일 구도와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사진 3매가 모두 22시부터 익일 06시 내의 시간에 촬영해야 함) ※ 홈페이지(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참고사항 ③에 있는 “불법주차 증빙자료(사진) 작성방법” 참고	3만원	
⑫ (검사기관의 검사 기준 미준수 등) 검사기관(전문·공인)의 검사 기준 미준수 및 불법행위 - 관련규정 : 고법 제35조의2제1항 ·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부적정(미실시, 시험압력 미유지) ----- 50만원 · 검사기록 부적정 및 미보존 ----- 30만원 · 용기외관검사 등 부적정 ----- 10만원 ◆ (증빙자료) 검사 기준 미 준수 및 불법행위 관련 사진, 동영상, 업소명 및 업소 주소 등 ※ 위법행위에 따른 차등 지급	최고50만원 ~ 최저10만원	
⑬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굴착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행위(굴착공사 지점에서 반경 2m 이하 위치에 고압가스 배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관련규정 : 도법 제30조의3 제1항 ◆ (증빙자료) 굴착공사현황 및 관련사진(일시, 장소, 내용, 공사시행자명 및 연락처 등)	10만원	
⑭ (미 허가·신고)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사용 등 고압가스 허가·신고대상인면서 허가·신고 없이 사용하는 행위 - 관련규정 : 고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0조1항 ·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10만원 · 고압가스 제조·충전·사용시설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5만원 ◆ (증빙자료)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사진, 업소명 및 업소 주소 등	최고10만원 ~ 최저 5만원	
⑮ (온라인을 통한 불법판매) 검사받지 않은 용기 또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내용적 10L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 함) - 관련규정 : 고법 제4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 ◆ (증빙자료) 고압가스(용기) 구매영수증, 고압가스용기 관련사진(용기 전·후단사진, 상부사진, 전체사진 각1부)	5만원	

불법행위 신고접수 · 처리대장

접수 번호	구분(1)	신고일	신고자	접수자	신고내용				처리결과(2)	포상금			비 고
					상호	대표자	주소	신고내용		대상여부 (3)	금액 (단위: 천원)	처리결과(4)	
1		20 . . .											
2													

- ※ (1) 구분 : 제보, VOC, FAX,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표시함
- (2) 처리결과 : 행정처분요구, 수사의뢰, 위법 없음 등으로 표시함
- (3) 대상여부 : 대상 ' 0 ', 미 대상 ' X ' 으로 표시함
- (4) 처리결과 : 완료, 진행으로 표시함

포상금 지급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전화)		
신고일		포상금액	원
*예금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은행명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 지침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			
신청인 : (서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으신 경우, 통보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지급신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